

단, 통지의 방법은 서면, 전화, 팩스, 전자적 방법 중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9조 (경기위원회의 성립) 경기위원회는 경기위원 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에 의하여 성립한다.

제10조 (경기위원회 결의방법)

- ① 경기위원회의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가결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경기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 ② 당해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기위원은 동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경기위원 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경기위원회의 업무) 경기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각종 공식대회 대회요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각종 공식대회에 대한 골프협회 R&A와 USGA가 승인한 골프규칙 적용
3. 각종 공식대회의 로컬룰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각종 공식대회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한 경기주심
5. 각종 공식대회 경기방식 결정 및 시상자 선정 결정
6. 각종 공식대회 참가선수의 참가자격 제한 심의
7. 각종 공식대회에서 로컬룰 위반행위 적발
8. 각종 공식대회 비매너 행위 적발
9. 기타 회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골프규칙 위반행위 적발

제12조 (골프규칙 위반 행위) 각종 골프대회 중 일어나는 골프규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1차 경기위원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2차 경기위원장의 결정이 최종결정으로 한다.

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시 상별분과위원회에 위임한다.

제13조 (참가자격의 제한) 각종 골프대회 참가선수의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각종 공식대회에서 스코어를 조작한 사실이 있는 자
2. 직원 및 캐디에게 폭언, 모욕, 욕설, 성희롱 등을 한 자
3.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